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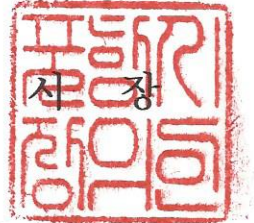
포항시 공고 제2016 - 5호

공 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8일

포 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체육시설의 경기장 사용시간을 실제 운영시간에 맞게 개정하고,
- 나. 포항수영장 이용료의 추가 사용시간 요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객의 민원을 해소하는 등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경기장 사용시간(조건)을 규정(안 제4조)
- 나. 포항수영장 1회 사용시간 및 시간 초과시 추가이용료 명시(안 별표3)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1. 28 ~ 2016. 2. 17(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790-722)
포항시청 체육지원과(☎ 270-2783, FAX 270-279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 간 : 06:00부터 09:00까지

제4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3”을 “2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종전 제3호)에 “주·야간 시간 중”을 “사용시간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 용 료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이용분	기 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국민체육센터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1시간	1,500		
		월	30,000		
	헬스	1회	2,000		
		월	30,000		
	에어로빅	월	30,000		
	요가	월	30,000		
	취미교실/강의	월(주1회)	5,000		
축구장	평일	주간	2시간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은 1면당 이용료로 한다	
		야간	2시간		50,000
	토·일 ·공휴일	주간	2시간		40,000
		야간	2시간		60,000
풋살구장 /족구장	주간	1시간	20,000		
	야간	1시간	22,000		
포 항 수영장	어른	1회(3시간)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50/100 추가				
시민볼링장	어른	1게임	2,500		
	청소년	1게임	2,000		
테니스장	개인	1코트 (1시간)	주간	2,000	
			야간	3,000	
정구장	개인	1코트(1시간)	2,000		
국궁장	개인	1회(1시간)	2,000		
인라인롤러장	개인	1명 2시간	2,000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골 프	월	40,000	주경기장, 포항체육관 홍해실내체육관 운영종목 신설되는 종목의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탁 구	월	20,000		
	배드민턴	월	20,000		
	농 구	월	20,000		
	배 구	월	20,000		
	족 구	월	20,000		
	핸 드 볼	월	20,000		
	프리테니스	월	20,000		
	에어로빅	월	20,000		
	요 가	월	20,000		
	헬 스	월	20,000		
	댄스스포츠	월	20,000		
	라인댄스	월	20,000		
	밴드체조	월	20,000		
만인당	개인	1회(2시간)	2,000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이 하며, 경기장 사용 시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신 설></p> <p>1. 주간 : 09:00 부터 18:00까지</p> <p>2. 야간 : 18:00 부터 23:00까지</p> <p>3. 사용자는 <u>주·야간 시간 중</u>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한다.</p> <p>③~④ (생략)</p>	<p>제4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조간 : 06:00 부터 09:00까지</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야간 : 18:00 부터 <u>24:00까지</u></p> <p>4. ---- <u>사용시간의</u>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u>이용료</u> (제4조제2항 관련) (단위:원)					【별표 3】 <u>이용료</u> (제4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이용분	기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구 분	이용분	기준	1명당 이용료	비 고
포 항 수영장	어른	1회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 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포 항 수영장	어른	1회	3,000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월	68,000				(3시간) 월	68,000	
					1회 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50/100 추가				